2. 선박부품 세척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

1 -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4년부터 □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◎사업장, ⑪사업장, ○사업장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3년간 선박 부품의 산세척 및 피막 도장처리업에 종사하였다. 산세척 작업 시 올바른 보호구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근무하였고 이에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 등의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, 2022.7.1. △대학병원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.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해 '미만성 대B-세포림프종'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~ 작업환경

근로자는 산 처리(Acid Pickling) 공정에서 약 13년간 강판 세척 및 피막 코팅작업을 수행 하였다. 주식회사 ○사업장의 산처리 공정 근무 형태는 1조 1교대 10시간(잔업시간 2시간 포함)으로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였다. 근로자의 상세 업무 내용으로 선박 의장 철(배관 등)을 세정 및 탈지, 수세 및 표면처리, 인산염 피막 및 탕세(습식건조)작업을 실시하 였다. 산 처리 공정 일련의 과정에서 세정부터 검사까지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, 이때 세정공정에서 금속 표면처리 업무 시에 발생하는 유기용제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에 노 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. 근로자는 외부 선별작업에서 입고 된 선박 의장 철(배관 등)을 호이 스트 크레인으로 조작하여 약 4~5톤 무게의 강판을 하루 최대 10~11개(산 처리 일평균 5-6회, 주간 30회, 월간 75회)를 세정 및 탈지조에 담금하여 금속 표면처리 업무를 수행하 였다. 세정공정에서는 바니쉬 및 이물질 코팅 제거하기 위하여 디클로로메탄(염화메틸렌)이 함유된 화학제품을 사용하며, 작업시간은 30분-1시간정도 소요된다. 사업장의 환기 실태현 황의 경우 산 처리 공장의 세정조/탈지조와 산세조/피막조(가로 2.5m, 세로 9m, 높이 1.5m)에 각 조 4면에서 슬롯 후드 형태로 가동되고 있었으며, 세정집진기가 설치 및 상시 가동되는 구조였다. 현장방문 시에 제어풍속을 측정하였으나 각 조의 4면에서 배기가 이루 어져 방해기류를 발생시키는 적절하지 않은 환기장치 구조였다. 전체 환기의 경우 루프 팬과 출입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실시되고 있었다.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날씨가 흐리거나 습 한 경우 또는 겨울철에는 세척탱크의 보온을 위하여 외부 문을 닫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상 태라고 진술하였다.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보호구(방독마스크, 화학물질 보호복, 장갑 및 장 화 등)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, 사업장 측에서는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 자들이 의사소통 및 불편함의 이유로 미착용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.

3 →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2022년 6월 26일 목의 종괴로 △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022년 6월 27일 전신마취하 우측 목 림프절 절제생검술을 시행하였다. 2022년 7월 1일 조직검사 결과에서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미만성 거대 B-세포 림프종(Diffuse large B-cell lymphoma)을 진단받았다. 이후 ▽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암치료 중에 있다. 상병진단 이전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만성신부전의 과거력이 있으며, 악성질환의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. 의무기록에서 현재 금연 상태이나 과거 약 20년 정도 흡연하였고, 음주는 약 20년 정도, 주 2회, 1회시 평균 소주 1병정도로 확인된다. 신청상병 진단 전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내역에서 상기 기술한 내용외 특이 질병력은 확인되지 않는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65년생)은 만 56세가 되던 2022년 7월에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미만성 대B-세포림프종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2004년 11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○사업장까지 약 13년간(휴직기간 제외) 산세척 및 피막 처리업에서 근무하였다.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미만성 대B-세포림프종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으로는 제한적 근거로 디클로로메탄, 트리클로로에틸렌, 벤젠, 스티렌이 있다. 근로자는 약 13년간 산처리 공정에서 강판 세척 및 피막 코팅작업을 수행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되었고, 비정형 작업에서 고농도 노출의 가능성도 있었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. 끝.